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1174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91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117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선우(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소1078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그 중 2,000,000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1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가능한 청구로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형태의 병합 청구도 허용되므로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9. 2,000,000원을, 2018. 12. 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아내 C 계좌에서 원고의 아들 D 계좌로 57회에 걸쳐 총 3,18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에 대한 월 30%의 이익금과 원금의 6배를 반환할 것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는 2018. 8. 초경 및 2018.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30%의 이익금과 원금의 6배를 반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하 위 2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들’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들에 따라 2018.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원고에게 약정 이익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이익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약정을 이행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익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들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이익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원금 12,000,000원(= 2,000,000원 + 10,000,000원)과 미지급 이익금 57,000,000원(= 100,000원 × 57일)의 합계 177,000,000원이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거나 위 기망행위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약정들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들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 1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TRC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에게 TRC 매매대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 받은 돈으로 TRC를 매매하고 그에 기한 이익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 더군다나 원고는 투자금액 상당의 TRC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가 투자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에 대한 월 30%의 이익금과 원금의 6배를 반환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들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들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들의 내용과 같은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